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「법원조직법」(법률 제17125호, 2021. 2. 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윤리감사관실의 소속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9조제2항)
-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기관을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로 변경함(안 제17조 내지 제23조)
-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시 경유할 기관을 법원행

정처장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변경함(안 제24조 내지 제27조)

- 부패방지업무의 담당기관을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 실로 변경함(안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)

4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법원행정처”를 “대법원 윤리감사관실”로 한다.

제17조,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, 제19조,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, 제21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, 제22조제1항 및 제2항, 제23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 중 “법원행정처장”을 각각 “대법원 윤리감사관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제2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”를 “제34조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법원행정처장”을 “대법원 윤리감사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5조의2제2항”을 “제35조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”을 “제36조제1항부터 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원행정처장”을 “대법원 윤리감사관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, 제2항 중 “법원행정처장”을 각각 “대법원 윤리감사관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법원행정처는”을 “대법원 윤리감사관은”으로 하고, 같

은 조 제3항 중 “법원행정처장”을 “대법원 윤리감사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원행정처는”을 “대법원 윤리감사관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회의 간사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<u>법원행정처</u> 윤리감사제1심의관 및 윤리감사제2심의관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 <u>대법원 윤리감사관실</u> 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대표자의 선정) <u>법원행정처</u> 장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,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 (대표자의 선정)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8조(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) ① <u>법원행정처</u>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② <u>법원행정처</u>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18조(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) ①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신고의 보완)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신고의 보완)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0조(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)</p> <p>①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한 경우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)</p> <p>①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.</p>
<p>제21조(신고사항의 조사 등) ①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법원 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신고사항에</p>	<p>제21조(신고사항의 조사 등) ①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원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법원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</p>	<p>③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2조(신고자의 비밀보호) ①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22조(신고자의 비밀보호) ①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3조(조사결과의 통보 등) ①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법원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법원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.</p>	<p>제23조(조사결과의 통보 등) ①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4조(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)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「공직</p>	<p>제24조(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대법원규칙」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②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를 <u>법원행정처장</u>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-----</p> <p>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27조(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) ①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제25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</p>	<p>제27조(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) ①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·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9조(자체 부패방지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법원행정처</u>는 각급법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법원행정처장</u>은 각급법원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·평가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법원행정처</u>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·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29조(자체 부패방지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<u>대법원 윤리감사관</u>은 ----- ----- -----.</p>

<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	
연락처	(02) 3480 - 1796